

수원지방법원 2021. 4. 22 선고 2020가단5339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왕동열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

담당변호사 이재진, 임철승, 김기봉, 한경민

변론 종결 2021. 3. 18

판결 선고 2021. 4. 2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6. 7.
체결한근저당권설정계약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. 6.10. 접수
제11645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6억 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

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,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2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주식회사 C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가 2019. 6. 7.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.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6억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2. 판단

소외 회사가 2019. 6. 7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.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

다. 그러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형식

별지